



TECHNICAL INFORMATION

NO.2018-ETC-09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24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18 December 2018
Person in charge : Lee Tae-hoon

제목 : 홍콩 / 대만 / 중국 지역별 0.5%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2020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관련 각 국가별 별도의 항만규정이 시행예정 및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대만/중국 지역에 대한 최신 황 함유량 규제 요건을 정리하여 기술정보로 발행 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홍콩지역 황 함유량 규제

1. 적용 대상

- 홍콩규정에 명시된 별도의 선박을 제외한 홍콩영해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유무에 관계없이 규정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2. 규정 요약

- 규정에 적합한 연료유에는 황 함유량 0.50% 이하인 저유황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환경보 호국이 승인한 기타연료가 포함됨.
- 황 함유량이 0.50%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경우 홍콩해역에 진입하기 전 연료유 절환이 이뤄져야 함.
- 연료유 절환작업은 로그북에 기록 되어야 함. 연료유 절환적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문서 는 선상에 보관해야하며, 로그북과 연료유 공급서는 3년 동안 선박에 보관해야 함.

3. 적용 시기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기타사항

- 1) 면제
 - 선박이 저 유황유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같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 배출 감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Korean Register Page 1/5(K)

- 면제는 당국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조건에 따름.
- 2) 벌금 규정
- 부적합한 연료유 사용 : 최대 벌금 \$200,000 및 6개월 구속
- 기록 부재 또는 서류 미보유 : 최대 벌금 \$50,000 및 3개월 구속

대만지역 황 함유량 규제

1. 적용 대상 및 규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적 선박이 대만의 국제상업항구 해역에 진입할 경우, 황 함유량이 0.50%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배출 감소 효과를 만족할 수 있는 대체연료 또는 동등물을 사용해야함.

2. 적용 시기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3. PSC 점검사항

- 1) EGC (Emission Gas Cleaning) System 인정 여부 : SCRUBBER적용 선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제함.
 - 가. Open Type Scrubber
 - Sewage 배출요건과 동일하게 12해리 밖에서 배출허용
 - 12해리 이내(항구포함) 배출금지
 - 입항 12해리 전부터 0.5% Lower Sulphur사용할 것.
 - 나. Closed Type Scrubber and Hybrid Type Scrubber
 - Sewage 배출요건과 동일하게 12해리 밖에서 배출허용
 - 12해리 이내(항구포함) 배출금지
 - 처리된 Water의 저장탱크(Sludge Tank)용량 초과 시 육상 배출. 또는,
 - 0.5%이하 Lower Sulphur사용으로 전환 (항내 전환은 인정하지만, Sludge Tank여분 잔량을 충분히 고려할 것.)
 - 다. 적용시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집중 점검
- 2) 2019년도 PSC 중점 점검항목
 - 가. 0.5% Sulphur regulation 적용관련
 - Bunker Delivery Note
 - Oil Record Book (and/or Engine Log Book)
 - Bunker Change Procedure보유 및 작동법 숙지상태 점검.
 - Scrubber 설치 선박의 경우 Scrubber에 대한 제반 승인 서류 및 작동법 친숙화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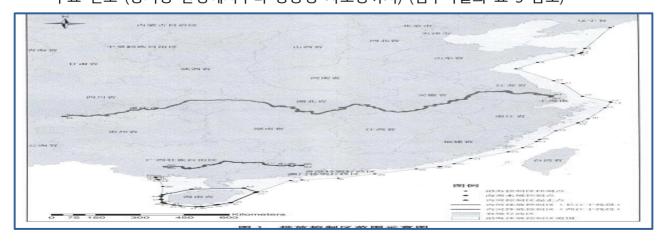
Korean Register Page 2/5(K)

- 특히, 12해리 이전에 0.5% Lower Sulphur 적용 근거를 집중점검
- 나. 기타 점검항목
 - 2017년/2018년 TOKYO MOU CIC 항목
 - 이전 TOKYO MOU CIC 항목을 4개월마다 점검항목 선정 시행
- 다. 우선점검 대상 선박
 - 선령 15년 이상 GT 3,000이상 Oil Tanker
 - 선령 10년 이상 Chemical Tanker
 - 선령 12년 이상 Bulk Carrier
 - 선령 15년 이상 여객선
- 라. 2013년 01월 01일부터 GT 5,000이상 경/중질유 운반 Single Hull Tanker 및 GT 600 이상 Single Hull Tanker 대상 점검사항
 - 원유/아스팔트유 운반 Tanker는 대만 입항금지
 - IBC Code요건
 - BWM Convention요건
- 3) 첨부된 대만 MOTC 발표 자료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상기 PSC Inspection 관련 정보 중 일부사항은 대만 정부로부터 공식 접수된 공문에 의한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선 박이 대만해역 황함유량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현지 정부담당자와의 미팅 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따라 서 해당 PSC Inspection 정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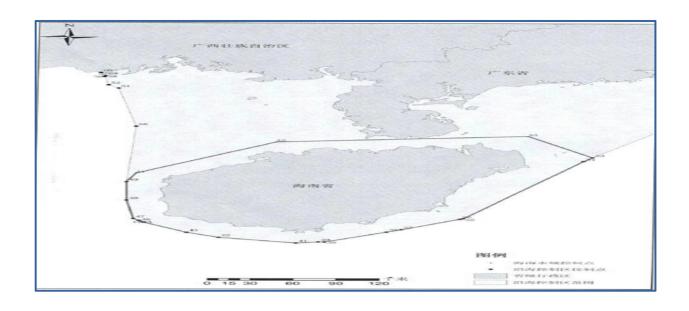
중국지역 황 함유량 규제

1. 배출규제해역

- 배출규제해역은 연해규제해역과 내하규제해역으로 구성됨.
- 연해규제해역 : 중국연해 12마일안의 항구 및 모든 해역(홍콩, 마카오 및 대만 해역 제외) 및 해남수역을 포함함 (첨부 파일의 표 1 & 2 참조)
- 내하규제해역 : 양쯔강 주요 선로 (운남성 수이푸 현에서 장쑤성 류허 하구까지)와 시장강 주요 선로 (광시성 난닝에서부터 광동성 자오칭까지) (첨부파일의 표 3 참조)



Korean Register Page 3/5(K)



2. ECA requirements

- 2019년 1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0 %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내하규제해역(Inland emission control area)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 유량 0.10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연해규제해역 해남수역(Hainan water)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0 %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
- 적당한 시기에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연해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 사용을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임.

- China Sulphur limit for Fuel Oil (China ECA Regulation)

Applicable region	Applicable date	Sulphur limits
entering the coastal control areas	2019.1.1 ~	≤ 0.5% m/m
	2025.1.1.~ (To be evaluated)	≤ 0.1% m/m
entering Hainan Waters	2022.1.1. ~	≤ 0.1% m/m
entering the inland emission control areas	2020.1.1. ~	≤ 0.1% m/m

3. 육상전력 규정

- 2019년 7월 1일 이후 육상전력 공급시스템을 갖춘 선박(탱커제외)은 연해규제해역 내 육상 전력 공급능력을 갖춘 부두에서 3시간이상 정박할 경우 혹은 내하규제해역 내 육상전력 공급능력을 갖춘 부두에서 2시간 이상 정박할 경우 육상전력을 사용해야 함.

Korean Register Page 4/5(K)

- 2021년 1월 1일부터 여객선은 배출규제해역 내 육상전력 공급능력을 갖춘 부두에서 3시간 이상 정박할 경우, 선박에서 기타 대체방식이 없을 시 육상전력을 사용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선박은 청결에너지, New 에너지, 선박축전설비 혹은 배기가스세정장치 등의 대체수단을 사용하여 선박배출통제규정을 만족할 수 있다. 배기가스 후처리방식을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한 배출수는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중국 국적의 중국국내항해 선박에 대한 규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 끝 -

Attachment: 1. Official letter of Hong Kong EPD - 1 copy

2. Official letter of Taiwan MOTC – 1 copy

3. Official letter of China MCA – 1 copy

협 약 본 부 장 *Lee*

배부처 : 선주 및 선박관리자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Korean Register Page 5/5(K)